

의안번호	제2586호
의 결	2023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쌍자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3. 3. 7.

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쌍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3. 7.

발 의 자: 이쌍자, 김향숙, 김원순,
최두임, 허옥희, 김희태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무분별한 관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, 소음,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군민이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,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군민이 주도적인 관광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고성군 공정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정관광 및 공정관광사업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, 지원·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공정관광주민협의체 및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입법예고(2023. 3. 7. ~ 2023. 3. 13.): 의견있음

제 정 안	제출의견(문화관광과)	검토의견	반영 여부
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 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.</p>		
<p>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계획) ① 군수는 공정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<u>매년</u>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 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 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계획) ① 군수는 공정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<u>5년</u>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 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 여야 한다.</p>		

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고성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고성군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정관광”이란 관광객, 지역주민,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,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·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·환원되며,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·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.
2. “공정관광사업체”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체험관광 및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공정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, 법인·단체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자(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포함한다) 또는 그 단체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공정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정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지속적인 관광자원 정보 공유, 군민과 공정관광사업체와의 이해 상충 중재 및 군민의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.

1.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
2.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
3.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공정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
5. 주민주도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
6. 공정관광 홍보·교육,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
7.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
8.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9.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,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

제6조(지원·사업)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

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공정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지원,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
2.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
3.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
4. 관내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
5.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
6.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
7. 공정관광 교육, 홍보·마케팅
8. 공정관광 국내·외 교류 및 협력
9.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

제7조(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) ① 군수는 군민이 공정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공정관광주민협의체는 「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공정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.

제8조(공정관광사업협의체) ① 군수는 전국 단위 및 관내 공정관광사업체로 구성된 공정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공정관광사업협의체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.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고성형 지역관광추진조직(DMO,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. 이하 “고성관광추진조직”이라 한다)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관광추진조직이나 공정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